의안 번호	88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10.29.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정순욱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정순욱 의원)

○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1항)

나.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2조

나. 관계법령 저촉 여부: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라. 입법예고(2026. 10. 15. ~ 10. 21.):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현행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생 략)
	개정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컨설팅 지원** **2. 재료,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3. 브랜드 개발,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신 설>** **5. 전문인력 양성 <신 설>**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나. 검토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함.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은 2024년 세계 3위에서 2025년 세계 2위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가 K-뷰티를 수출 유망 소비재이자 신성장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구체화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국내화장품 산업 생산·수출·수입액,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액	145.49	105.18	111.11	128.58	126.15
수출액	91.84	79.53	84.62	101.74	114.18
수입액	13.05	13.25	13.13	13.24	12.89
무역수지	78.78	66.28	71.50	88.51	101.2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안 제4조제1항은 기존의 다소 선언적 지원사업을 창업·경영·기술개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재료·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기관·단체

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확대·구체화하려는 것임. 이는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고, 기술개발부터 품질 향상, 판로 개척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1]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뷰티제조산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뷰티제조산업의 지원사업을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등의 역량을 활용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 지원 시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업의 필요성, 지원 대상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소요 비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글로벌 뷰티시장의 수출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